김세철학술인상 심사규정

2014년 2월 제정

2015년 7월 15일 1차 개정

2016년 9월 23일 2차 개정

2017년 7월 19일 3차 개정

2018년 9월 19일 4차 개정

제 1 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김세철학술인상" (이하 "학술인상")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으로서 학술 업적인 뛰어난 연구자를 시상함으로써 비뇨의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인상의 목적에 따라 학술인상의 심사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이 상은 매년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의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여하며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 (최대 2,000만원)을 대한비뇨의학회장이 수여한다.

제 4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김세철학술인상 운영을 위하여 김세철학술인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및 김세철학술인상 최종심사위원회 (이하 "최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이사 (이하"학술이사") 및 학술위원 (이하"위원") 중에서 25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위원회 임기에 준한다. 단,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위촉 확정시부터 당해 연도 수상자 결정까지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⑥ 위원회는 선별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최종심사를 위한 3인의 응모자를 선정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최종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하 "회장")을 위원장 (이하 "최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이사 외 4인의 상임이사로 최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⑧ 최종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현직 학술이사를 간사로 임명한다.

⑨ 최종위원회의 회의는 최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최종위원회 위원의 출석으로 유효하 게 성립한다.

제 5 조 (수상자격)

- ① 수상자는 위원회 및 최종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된 심사 세칙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수상자는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한다.
- ③ 수상한 자는 수상 후 만 5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규정 및 심사 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심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게 성립된 각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의 변경은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발효된다.

김세철학술인상 심사세칙

2014년 2월 제정 2015년 7월 15일 1차 개정 2016년 9월 23일 2차 개정 2017년 7웡 19일 3차 개정 2018년 9월 19일 4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가 제정한** 김세철학술인상 (이하 "학술인상")의 심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 ① 매년 대한비뇨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 5개월 이전에 학술인상 응모 공고를 시행하며, 학술인상 응모자는 학술대회 4개월 전까지 응모한다.
- ② 학술인상 응모자는 소정의 응모양식과 대표 논문 5편의 pdf 파일을 응모 기간 내에 제출한다. 응모 논문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근거로 응모 3년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 3개년간 SCI (SCIE 포함)급 학술지에 게재된 원저(original article)로서 응모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학술지 게재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출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전자출판만 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전자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심사는 선별심사와 최종심사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선별심사는 김세철학술인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최종심사는 김세철학술인상최종심사위원회 (이하 "최종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최종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과정 진행을 총괄하여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심사의 전 과정을 완료하고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학술인상 응모자는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 회칙 제 7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 (선별심사)

① 선별심사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위원 또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2017.07.19. 개정)

- ② 선별심사의 점수는 "위원 점수 (60점)"와 "SCI 등급 점수 (40점)"로 구성한다.
- ③ 위원 점수는 선별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의해 부여되는 점수로서 논문의 필요성 (20점), 독창성 (20점), 향후 학술적 기여도 (20점)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논문의 필요성은 관련분야에 대해 기초 또는 임상적으로 핵심이 되는 의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답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독창성은 해당 논문의 핵심어 검색시 얻어지는 자료를 검토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문적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되는 독창적인 결론을 담고 있는 연구인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향후 학술적 기여도는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 혹은 종설 집필 시 인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SCI 등급 점수는 다음 공식에 따라 부여한다.

SCI 등급 점수: (SCIx / SCImax) * 40

- SCIx : 개별 논문의 SCI impact factor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
- SCImax : 접수된 모든 응모자의 논문 중 가장 높은 SCI impact factor
- ⑤ 개별 논문의 선별심사 점수는 전체 위원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여기에 SCI 등급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⑥ 위원회는 선별심사 점수 상위 3인을 선정하여 최종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사를 시행한다.

제4조 (최종심사)

- ① 선별심사를 통하여 최종심사에 포함된 응모자는 심사대상으로 제출한 5편의 논문 외에 응모 3년 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 3개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근거로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 (원저, letter, 종설, 증례 등)의 전체 목록과 각 논문의 pdf 파일을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학술지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각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학술지 게재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출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전자출판만 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전자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최종심사 대상 응모자가 소속된 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위원 또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는 최종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장 (회장)과 간사 (학술이사)는 예외로 한다.
- ③ 최종심사는 유효하게 성립된 최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의해 시행되며, 최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소 1개월 전에 최종심사를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최종위원회 소집 일정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최종심사는 최종위원회 위원장 주재 하에 최종위원회 위원들의 자유 토론과 투표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선별심사 평가 점수, 논문 전체 목록, 논문 등이 평가에 포함된다.

자유 토론 및 투표 방식은 최종위원회 위원장 제안에 의해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석 최종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에 대하여 3차 투표를 시행한다. 3차 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왔을 경우 최종위원회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시행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결과 보고 및 승인)

- ① 최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종심사의 결과 요약, 각 단계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결과가 포함된 심사 보고서를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 ② 상임이사회에서 심사 보고서 검토 후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절차를 득함으로써 학술인상 수상자를 확정한다.
- ③ 수상 취소 및 제한조항: 수상에 심각한 결격사유 (예, 표절, 이중게재 등)가 발견될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6조 (기타 사항)

본 규정 및 심사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심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게 성립된 각 심사위원 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7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1. 본 심사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